

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4. 12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7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7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0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황 의 진)

가. 제안이유

-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·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우리구 명예구민증수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(안 제2조제1항)
 - 타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
 -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,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,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종로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
 -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인
- 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, 구 의원 및 공공단체의 장, 1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, 10인 이상의 종로구민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함.(안 제3조)
-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하고 메달이나 기념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음.(안 제5조제1항)

-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구정 관련 위원회 및 구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6조)
-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. (안 제7조)
-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. (안 제9조제2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김성배 위원의 심사보류안 동의

6. 審査保留案의 要 旨

- 제명이 ‘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’로 되어 있으나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후에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‘명예구민증 수여’를 조례명으로 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므로,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조례명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함

7. 審 査 結 果 : 심사보류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로 가결함)